

	<b>대학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 규칙</b>	규정번호	3-3-23	
		제정일자	2015.09.01	
	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학칙 제14조의 2(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)에 의거하여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(이하 “영향평가”라 한다)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평가 대상)** 본 대학에서 대학 입학전형으로 실시하는 대학별 고사(논술 및 필답고사, 면접 및 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 및 실험고사,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등)를 대상으로 하되, 실기고사(예체능)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3조(평가 방법)** ① 제2조에 따른 본 대학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.

② 교과 지식과 관련 없으며, 인성·학생부·자기소개서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의 면접고사인 경우에는 영향평가 방법을 간소화 할 수 있다.

**제4조(평가의 시기 및 반영)** ① 영향평가는 본 대학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(수시 및 정시)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평가 결과의 공시)**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 대학 입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**제6조(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대학입학 전형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, 내부위원은 교무부처장 및 교직원으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은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, 현직 고교 교사,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대학별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2.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
3.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
4.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5. 기타 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

- ⑥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교학처 입서관리팀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- ⑦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 (기타)**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